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가 맹 사 업 거 래 의 공 정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직영점 운영 의무화의 예외 등을 구체화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일부 과태료 부과권을 일부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5조의5, 안 [별표 1])

- 1) 개정 가맹사업법(21.11.19 시행 예정)은 가맹본부의 직영점의 운영 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함
- 2) 또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직영점 운영 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방식이 검증되어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으로 예외사유를 구체화함

- 3) 개정법은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에 임원의 운영기간을 직영점 운영기간에 합산토록 함

나.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 확대(안 [별표 1])

- 1)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 가맹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필요한 정보가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2)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및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함

다.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시·도지사 이양(안 제35조)

- 1)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 필요
- 2) 5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개 시·도지사(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부여함

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명확화 (안 [별표 1])

- 1) 현행 시행령상 정보공개서에 공정위의 시정권고 이상 조치받은 사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포함)은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등록 취소 사실은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2) 지자체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실도 정보공개서 기재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6. 28. ~ 8. 9.) 진행 예정

3) 규제심사 진행 예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 중 “체결일”을 “체결일(직영점의 경우 운영 시작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제5조의6부터 제5조의10까지로 하고,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이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사업의 방

식이 검증되어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7(중전의 제5조의6) 중 “제5조의5”를 “제5조의6”으로 한다.

제5조의9(중전의 제5조의8)제1항 중 “제5조의9”를 “제5조의10”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35조 중 “법 제43조제6항제1호”를 “법 제43조제6항”으로, “이 영 제5조의2”를 “법 제6조의2”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사실”을 “사실 및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로 하고, 같은 표 별표 1 제6호바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직전 사업연도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단, 온라인 매출액 비중의 경우 자사 온라인몰 매출과 기타 온라인 매출로,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의 경우 가맹점 매출과 기타 오프라인 매출로 구분하여 기재)

2)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의 비중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목록 및 주소

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별 운영기간 및 직영점
의 평균 영업기간

다.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직영점 별 연간 매출액 및 직영점의 연
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별표 1의2 변경등록사항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4. 28.>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변경 등록 사항	별표 1 제1호: 전체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마 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별표 1 제3호: 나목 별표 1 제4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0일
	별표 1 제2호: 차목 별표 1 제3호: 자목1) 및 2) 별표 1 제5호: 가목, 나목1)·3) 및 다목 별표 1 제6호: 라목, 마목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 별표 1 제8호: 전체 별표 1 제9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표 1 제2호: 바목, 아목 별표 1 제3호: 다목부터 아목까지, 자목3) 및 차 목 별표 1 제5호: 나목2) 별표 1 제6호: 가목, 바목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 일.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 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별표 1 제10호: 전체	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고 사항	별표 1 제2호: 나목(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사목 (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 된 정보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 카목 및 타목 별표 1 제7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하고,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

가맹사업의 업종

구분	가맹사업의 업종
외식업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치킨, 피자, 커피, 음료(커피 외), 아이스크림/빙수,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주점, 기타 외식
도소매업	편의점, 의류·패션, 화장품, 농수산물, 건강식품, 종합소매점, 기타 도소매
서비스업	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유아 관련(교육 외), 스포츠 관련, 이미용, 자동차 관련, PC방, 부동산 중개, 임대, 숙박, 오락, 배달, 안경, 세탁, 이사, 운송, 반려동물 관련, 약국, 인력파견, 기타 서비스

비고

기타 외식, 기타 도소매, 기타 서비스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상품이나 용역,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구체적인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4. ~ 6. (생략) ③ ~ ⑧ (생략) <u><신설></u>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체결일(직영점의 경우 운영 시작일을 말한다)</u> ----- -----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u>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직영점을 가맹본부</u>

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이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사업의 방식이 검증되어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5 (생략)

제5조의6 (현행 제5조의5와 같음)

제5조의6(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 간 정보공개서의 등록·공개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7 (생략)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조의9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5조의9 (생략)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 제5조의6 -----

-----.

제5조의8 (현행 제5조의7과 같음)

제5조의9(가맹금의 예치 등) ① -

제5조의10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10 (현행 제5조의9와 같음)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5조(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중 이 영 제5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 임한다.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연 락 처	(044) 200 - 4937